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 일 시 : 2015. 5. 22.(금), 10:00~15:30
- ▣ 장 소 : 보령 머드린호텔 2층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현혜, 최성락, 박보현, 강현숙,
김권구, 서동철, 한필원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고성 홀리 풍력발전소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2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3	삽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4	삽교천 삽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5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오염토양 정화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6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7	사직단 내 전사청 권역 발굴(시굴)	공개
8	영월 자규루 및 관풍헌 주변유적 발굴	공개
9	안성 죽주산성 남벽정비구간Ⅳ 발굴	공개
10	화성 당성 3차 발굴	공개
11	화성 만년제 4차 시·발굴	공개
12	보령 충청수영성 동문지 및 성벽 발굴	공개
13	성주 법수사지 발굴	공개
14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15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	공개
16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공개
17	함안 말이산 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공개
18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19	창원 신방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보존유적 재평가 재심의	공개
20	하남 하사창동 〇〇〇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21	하남 하사창동 〇〇〇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22	하남 향동 〇〇〇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23	과주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24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조치 이행계획 심의	공개

【보고사항】

1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공개
---	---------------------------	----

I.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5-05-01

1. 고성 흘리 풍력발전소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고성알프스풍력발전(주)에서 시행하는 강원도 고성군 흘리 산1-108번지 일원 「고성 흘리 풍력발전소 조성사업부지」 내 일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고성 흘리 풍력발전소 조상사업 부지조성사업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 1-108 번지 일원
- 사업면적 : 4,038,663m²
- 사업내용 : 고성 흘리 풍력발전소 조성
- 시행자 : 고성알프스풍력발전(주)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예맥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부원장)
- 조사면적 : 4,038,663m²
- 조사기간 : 2015. 4. 22. ~ 2015. 5. 8.
- 조사결과
 - 유적과 관련된 어떠한 유물 및 유구도 확인할 수 없었고, 유적이 입지하기에는 부적절한 지형으로 볼 수 있으며,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조사지역 및 주변 일대에서 확인된 소수의 민묘에 대해서는 장사법의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한편 이번 사업부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지정문화재가 없으며, 비지정 문화 유적의 경우 근대(1930년대)의 ‘홀리비석군(남서쪽 약 430m 이격)’이 분포하고 있을 뿐으로 이번 사업이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 학술자문회의(2015. 5. 8.)

- 참석자 : ○○○, ○○○
- 회의결과
 - 조사지역 내에는 조사기관 검토의견과 같이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사업이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사업시행 중 유물 또는 유적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2.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주)신한이 추진하는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62-1번지 일원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61-1 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077,963m²
- 사업내용 : 관광단지조성
- 시행자 : (주)신한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예맥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부원장)
- 조사면적 : 2,077,963m²
- 조사기간 : 2015. 3. 20. ~ 2015. 4. 16.
- 조사결과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도보답사를 통해 세밀히 살펴보았으나, 유적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유구 및 유물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음
 - 이는 지형적 요인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조사지역이 산악지형과 그 사이의 곡간(자골)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의 조사지역 내부의 양상으로 보아 조사지역 중앙부를 흐르는 자골천의 급류에 의한 침식활동이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유적이 입지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현장의 상황과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업부지 내에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라. 학술자문회의(2015. 4. 15.)

○ 참석자 : ○○○, ○○○

○ 회의결과

- 이전 조사지역인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61-1번지 일원은 ‘횡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조성부지’이다. 조사지역은 물안리 계곡을 중심으로 한 곡간부와 해발 700m 내외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자골천을 중심으로 한 곡간부는 현재도 침식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유적이 입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조사 결과 주변지역에서 요지 2기가 확인되었으나 사업부지와는 이격거리가 멀고 사업부지 내에서는 어떠한 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 사업부지의 지형 조건으로 볼 때 유적이 입지하기가 어려운 환경임을 비추어 조사기관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3. 삼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삼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건은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15. 4. 17.) 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삼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합덕읍 신흥리 일원
- 사업면적 : 1,573,713m²
- 사업내용 : 하천환경정비사업
- 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동서문물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실장)
- 조사면적 : 1,573,713m²
- 조사기간 : 2015. 2. 12.~3. 23.
- 조사결과
 - 조사대상지는 1~7구간으로 나뉘며 그 중 3구간은 삼교천이 크게 곡류하면서 형성된 충적대지로 이루어짐
 - 이 충적대지는 경작유구 등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사 시행 전에 표본 조사가 필요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m ²)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신흥리 유적분포예상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52-205번지 일원	82,370	미상	표본조사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82,370m ² (표본 82,370m ²)				

라. 학술자문회의(2015. 3. 6.)

- 참석자 : ○○○
- 회의결과
 - 조사지역은 삼교천의 서안일대의 천변 충적지로서, 지표 육안 관찰에 의한 유적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않음
 - 삼교천 방조제에 의한 수위 상승을 감안하면, 천변 충적지는 인간활동의 흔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현지조사(2015. 4. 30. / ○○○, ○○○)

- 현재의 지표면이 해발 2m 이내 이므로 조사기관이 표본조사로 제시한 3구간 외의 지역은 유적의 유존 가능성이 없음
- 현지조사 시 상당수의 지역은 강 수면과 동일 레벨로 물이 차있는 상태임
-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근세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대상지역은 이미 하천구간으로 파악됨. 최근 지형변화가 일어나 원지형이 삭평됨

바.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4. 삼교천 삼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충청남도 당진시~예산군 소재 삼교천 삼교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 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삼교천 삼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예산군 삼교읍 수촌리 일원
- 사업면적 : 3,492,409.79m²
- 사업내용 : 하천환경정비사업
- 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팀장)
- 조사면적 : 3,492,409.79m²
- 조사기간 : 2015. 4. 1.~2015. 4. 30.
- 조사결과
 - 지표조사 결과, 신규 유물산포지 4개소가 확인됨
 - 신규 유물산포지 중 예림리 유물산포지1은 백자편과 도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고, 이 지역의 배후에는 잔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이 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
 - 하포리 유물산포지1·2·3은 백자편과 도기편 등이 수습되고, 이 일대는 넓은 경작지대로 이전부터 가옥이 분포하며 배가 드나들었던 구만포구가 마주하고 있어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음
 - 수습된 유물의 빈도에 따라 하포리 유물산포지2는 시굴조사가 필요하고, 예림리 유물산포지1, 하포리 유물산포지1·3은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예림리 유물산포지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197번지 일원	44,020	조선	표본조사	
2	하포리 유물산포지1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337번지 일원	27,540	조선	표본조사	
3	하포리 유물산포지2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386번지 일원	47,120	조선	시굴조사	
4	하포리 유물산포지3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592번지 일원	82,000	조선	표본조사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200,680㎡(시굴 47,120㎡ / 표본 153,560㎡)				

라. 학술자문회의(2015. 4. 23.)

- 참석자 : ○○○, ○○○
- 회의결과
 -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하천정비·토지정리 사업으로 원래의 고하도 지형이 많이 변화하였음
 - 조사결과, 유물산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은 시굴·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5.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오염토양 정화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오염토양 정화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오염토양 정화사업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일원
- 사업면적 : 1,247,105m²
- 사업내용 : 오염토양 정화사업
- 시행자 : 한국환경공단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대한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기획처장)
- 조사면적 : 1,247,105m²
- 조사기간 : 2015. 1. 19. ~ 2015. 2. 17.
- 조사결과
 - 지표조사 결과, 신규 유물산포지 2개소와 성곽 1개소, 조사완료된 패총 1개소가 확인됨
 - 신규 유물산포지에는 삼국시대 토기편이 수습되고,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앞서 시굴조사가 필요함
 - 지정문화재인 장암진성은 지정권자의 심의 후 시굴조사가 필요함
 - 장암패총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기록 보존되었지만 유적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존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서천 송림리 아래몽니 유물산포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110전 일대	15,420	삼국, 조선	시굴조사		
2	서천 화천리 유물산포지2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433-3전 일대	22,215	삼국	시굴조사		
3	서천 장암진성 (시도기념물 제97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산1-1번지 일원	165,290	조선	시굴조사		
	계	시굴조사 202,925㎡					

라. 학술자문회의(2015. 5. 1.)

- 참석자 : ○○○, ○○○○
- 회의결과
 - 삼국시대 토기편과 패총 등이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취락지로 추정됨
 - 유물산포지 모두 유물이 넓게 산포하고 있으며, 화천리 유물산포지2의 경우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시굴조사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6.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전남 목포시 소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치 : 전남 목포시 석현동 21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979,000m²
- 사업내용 : 도시개발
- 시행자 : 목포시장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목포대박물관
 - 조사단장 : ○○○(동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동 박물관 연구실장)
- 조사면적 : 1,979,000m²
- 조사기간 : 2012. 7. 23.~2013. 2. 28.
- 조사결과
 - 사업부지 내에서 확인된 유적은 총 4개소(석현지석묘, 장재 유물산포지, 옥암 유물산포지, 초당산 고분)이며, 확인된 유적에 대해서는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m ²)	시대	조사기관 의견	비고
1	석현 지석묘2	전남 목포시 석현동 82-2 일원	1,701	청동기	시굴조사	
2	장재 유물산포지	전남 목포시 옥암동 276 일원	31,845	구석기-삼국	시굴조사	
3	옥암 유물산포지	전남 목포시 옥암동 206 일원	75,429	삼국	시굴조사	
4	초당산 고분	전남 목포시 옥암동 219-1 일원	1,600	삼국	시굴조사	
			110,575 (시굴조사)			

라. 학술자문회의(2014. 3. 21.)

- 참석자 : ○○○, ○○○
- 회의결과
 - 동 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결과 옥암 유물산포지와 초당산 고분군은 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석현동 지석묘군은 상석 주변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장재동 유물산포지는 지형 훼손이 심각하므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

-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하되,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7. 사직단 내 전사청 권역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직단(사적 제121호) 내 전사청 권역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종묘와 함께 국가 최고의 의례시설인 사직단은 일제강점기에 사직대제가 폐지(1911년)되고 공원(1922년)으로 조성되면서 변형·훼손되었으며, 사직단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자 사직단의 주요 건물 및 지형 등을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러한 사직단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직단 전사청 권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분포와 성격을 구명하고, 향후 보존·복원정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
- (2) 발굴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사직단 유적 I-3 전체 영역 및 I-4 일부 영역)
- (3) 발굴면적 : 5,563.45㎡(시굴)
 -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발굴조사로 전환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일
- (5) 발굴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실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1부장)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조사 방법에 대해 자문 검토 후 발굴(시굴)실시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8. 영월 자규루 및 관풍헌 주변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영월군이 추진하는 영월 자규루 및 관풍헌 주변유적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월군은 강원유형문화재 제26호인 영월 관풍헌 및 자규루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객사의 조성시기와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그 밖에 상층 박석시설과 자규루로 연결되는 담도시설, 내삼문지의 유존여부, 담장지와 백운루 등의 유구를 파악해 유적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월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1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발굴 212㎡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일
- (5) 발굴기관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소 조사연구실장)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9. 안성 죽주산성 남벽정비구간Ⅳ 발굴

가. 제안사항

안성시가 추진하는 안성 죽주산성 남벽정비구간Ⅳ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성시는 경기도기념물 제69호 안성 죽주산성 성벽 붕괴구간을 절개조사하여 복원된 성벽의 붕괴원인을 파악하고, 성벽 내·외부의 기저부를 노출하여 성벽의 초축 및 변화 과정, 구조적 특징 및 축조방법 등을 파악하여 성벽 복원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성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산 106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발굴 300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일
- (5) 발굴기관 : (재)한백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학예연구실장)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0. 화성 당성 3차 발굴

가. 제안사항

화성시가 추진하는 하남 당성 3차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시는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삼국시대 성곽에 대한 사적 범위를 확대하고, 통일신라시대 당성의 가치를 복원하며, 향후 당성을 역사의 현장 체험교육 공간, 지역주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화성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32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발굴 1,920㎡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5) 발굴기관 : 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
 -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 ○○○(동 연구소장)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1. 화성 만년제 4차 시·발굴

가. 제안사항

화성시가 추진하는 화성 만년제 4차 시·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시는 화성 만년제 1~3차 시·발굴 조사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서·남쪽 제외지에 대한 부분 발굴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범위와 관련 시설물 유무를 파악하고 향후 조사 및 복원 정비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화성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51-23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시굴 4,540m² / 발굴 960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5) 발굴기관 : (재)경기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소 유물부장)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시·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2. 보령 충청수영성 동문지 및 성벽 발굴

가. 제안사항

보령시가 추진하는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동문지 및 성벽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수영성’ 정비에 앞서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보령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33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800㎡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2일
- (5) 발굴기관 :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과장)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상 변경(보존정책과)허가 후 조치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13. 성주 법수사지 발굴

가. 제안사항

성주군에서 추진하는 “성주 법수사지 발굴조사” (문화재보수정비사업-국고보조사업)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인 법수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656호)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금당지, 강당지, 기타 부속 건물지 등 규모, 배치상태, 구조, 조성시기 등의 전반적인 유존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법수사지의 학술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전체 사역의 정비 및 보존·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성주군수(문화관광과)
-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4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5,691㎡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5) 발굴기관 : (재)대한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기획처장)

라. 참고사항

- 보호구역내 현상변경허가는 유형문화재과에서 해당분과위원회에 기 보고됨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대상 중 현상변경내용을 연초 분과위원회에 보고
- 현재 삼층석탑 주변으로 설치되었던 축대 내부는 2단으로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연화대좌 및 석물 등이 확인됨
- 2012년 6월~2013년 2월까지 (재)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법수사지 3층석탑 자체의 보존·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해체복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별도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4.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성주군에서 추진하는 성주읍 예산3길 35-12번지 소재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지표조사 결과, “조사구역 내에서 성주읍성 및 이와 관련한 복문지 그리고 추정 성벽, 다수의 유물이 지표상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선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시행 전 반드시 조사 I·II구역(32,378㎡)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유적의 분포유무와 성격과악 및 보존·보호 방안을 수립, 나아가 고고학적인 기초 학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지정문화재인 “도 유형문화재 제389호 성주예산리만산택 등” 주변지역에서의 발굴조사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성주군수(도시건축과)
-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3길 35-12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32,378㎡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1일
- (5) 발굴기관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과장)

라. 참고사항

- 테마파크 조성관련 군관리계획결정(근린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완료
 - 경상북도 고시 제2011-177호(2011. 5. 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도 유형문화재 제389호 성주예산리만산택 등)영향 여부 검토결과, 영향이 없음(성주군 문화관광과-7047호 / 2015. 4. 21.)
 - 다만, 시굴조사 후 성주읍성의 성벽으로 추정되는 곳과 공원조성부지 사이의 충분한 완충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이격거리를 재검토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5.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

가. 제안사항

경주시가 추진하는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에 대한 명확한 고증 조사 및 동궁의 규모와 영역확인, 왕경 중심부에 해당하는 도시구조의 명확한 규명을 하고자, 학술 정밀발굴 조사를 통해 복원·정비 자료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
- (2) 발굴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38-2번지 외 35필지
- (3) 발굴면적 : 23,688㎡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3) 발굴기관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책임연구관)

라. 참고사항

- 2007~200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지 9동과 저수·부석시설 등이 확인된. 유구의 훼손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임시 복토해 놓은 상태임.

마. 의결사항

- 보류
 - 사적분과 심의 후 재검토
- 보류 7명 / 출석 7명

16.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가. 제안사항

구례 화엄사에서 추진하는 전남 구례군 소재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구례 화엄사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구층암 정비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구례 화엄사
- (2) 발굴 대상지역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0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1,600㎡(발굴 400㎡, 시굴 1,200㎡)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5) 발굴기관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 조사 단 장 : ○○○(동 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소 팀장)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7. 함안 말이산 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가. 제안사항

함안군에서 추진하는 경남 함안군 소재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지정구역 내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고분(25, 26호분) 2기를 발굴조사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함안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73-2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4,050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25일
- (5) 발굴기관 : (재)우리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과장)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8.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남 김해시 소재 봉황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축열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 회의(2015. 3. 17.)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3. 17.)하고 유적에 대한 보존 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 동 건물은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15. 3. 20.)시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하도록 보류된 사항임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 경남 김해시 봉황동 ○○○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451㎡
- (4) 발굴기관 : (재)두류문화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팀장)
- (5) 발굴기간 : 2015. 2. 11. ~ 2015. 3.
- (6) 조사결과
 - 고려·조선시대 우물 및 기단석렬 등의 유구가 1m 아래에서 확인되었고 하부의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호안 석축으로 추정되는 석축열 확인
(석축열 규모 : 북벽 8.2m, 서벽 6.7m, 깊이 0.7m)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3. 17. / ○○○, ○○○, ○○○)

- 삼국시대 용도불명의 석축은 봉황토성 추정 벽 인근에 입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토 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노출된 평면(지하 4m 정도 조사)아래에도 문화층이 중복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석축과 판축유구의 보존정도 및 유구 노출면 아래 미조사 문화층의 보존 또는 하강 발굴조사 여부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3. 17. / ○○○, ○○○, ○○○)

- 평가 평점 : 49.16점

마.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 / 2015. 5. 7.)

- 삼국시대 석축 시설은 그 성격을 판단할 수 없으나, 토성 내부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석축시설과 미 발굴 문화층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사단 입회하에 충분히 복토 보존한 후 적법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

바. 사업시행자 의견(○○○)

- 동 사업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상이나 훼손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건축 시에는 기초공사 터파기를 하지 않고 현 바닥에서 기초를 높여 시공할 것임
 - 현 지반(지표) 레벨에서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마무리 하고 다짐을 실시

사. 관련기관 의견(보존정책과, 김해시)

○ 문화재청(보존정책과)

- 동 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평지붕 11m, 경사지붕 14m,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매장유구 조사 시행 여부,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을 결정)에 해당됨.
- 금번 신청사업(지상 2층, 연면적 262.89㎡, 최고높이 10.4m)은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축공사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영향 검토는 생략할 수 있으며, 현재 동 조사지역에 대한 복원·정비 계획은 없음.

단, 구제 발굴 시 봉황동 유적의 가치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성격이 확인되는 등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구가 발견될 때에 한하여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매입 검토

○ 지자체(김해시)

- 동 조사지역은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야왕궁 복원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곳으로, 현재 보존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향후, 가야왕궁의 보존정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토 및 매트공법 등을 적용한 건축 등으로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공사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2015. 5. 7.) 의견대로 조치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9. 창원 신방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보존유적 재평가 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재평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2011. 2.) 이전, 보존 조치된 발굴 유적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고자 함
- 동 건은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15. 3. 20.)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토록 보류된 사항임

다. 내 용

(1) 유적조사 개요

- 유 적 명 : 창원 신방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26번지 일원
- 유적성격 : 삼국시대 주거지, 저습지, 수혈, 구상유구, 목주열 등
- 조사기간 : 2006. 10. 11.~2006. 12. 26.(조사기관 : 동서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 보존조치 내용 : 시굴결과에 따른 원형보존
- 보존면적 : 35,147m²
- 관리단체 : 창원시장

(3) 보존조치 및 재평가 경과

- 시굴결과에 따른 원형보존 조치('07. 1. 29.)
- 법 시행에 따른 보존유적 재평가('11. 12. 2.)
 - 중요부분에 대한 발굴조사 후 문화재 지정 및 보존유적 해제 여부 결정
- 전체 면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후 재평가 실시('13. 8. 26.)
- 전체 면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실시('14. 5. 12.~'15. 2. 28.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라. 보존조치 재평가 회의 결과(2015. 2. 13. / ○○○, ○○○, ○○○)

- 평가 평점 : 53.92점(이전복원 기준평점 미만)
 - 통일신라시대 우물과 건물지, 삼국시대 주거지와 저습지가 확인됨
 - 유적의 성격에 특이성이 없고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므로 기록보존 후 보존조치(원형 보존)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 / 2015. 5. 7.)

- 유구의 밀집도와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보존유적에서는 해제하고**, 비교적 유구가 잘 남아있는 부분(하층 남쪽부)은 복토하여 보존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바. 검토의견

- 보존조치 재평가 회의결과 및 현지조사 결과대로 보존조치 해제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2015. 5. 7.)의견대로 하되, 유구가 잘남아있는 부분(하층 남쪽부)은 공원 등으로 활용방안 검토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20.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4. 7.) 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 하남시 하사창동 ○○○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발굴 390㎡
- (4) 발굴기관 : (재)화랑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장)
- (5) 발굴기간 : 2015. 3. 24.~2015. 4. 1.
- (6) 조사결과
 -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호 건물지는 도리칸 7칸, 보칸 3칸 규모의 건물지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건물의 축조시기는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초반까지 소급 가능함.
 - 건물지의 보다 정확한 성격 및 주변 유구와의 관계는 향후 인접 유적 발굴 결과와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구명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 ○○○, ○○○, ○○○)

- 천왕사지 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암거형 배수로가 확인되었으며, 강당지 서편은 일부 하사창동 ○○○번지로 연결되고 있음. 출토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암·수막새 등이 수습됨
- 천왕사지의 중심사역에 해당하는 강당지로 추정되고 건물지가 확인된 유적으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임
- 천왕사지의 금당지에 이어 강당지가 확인된 것으로 천왕사지의 중심사역을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 판단되어 보존하여야 할 것임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4. 7. / ○○○, ○○○, ○○○)

- 평가 평점 : 80.53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천왕사지의 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측에 인접한 하사창동 ○○○번지와 연관된 유적지로 사찰의 강당지로 추정됨. 동측 인접지역은 조사지역이 아니어서 확인할 수 없으나, 향후 서측과 유사한 회랑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본 유적은 물론 주변 일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함
 - 건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유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 실시하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함

바. 사업시행자 의견(○○○)

- 본인은 감일동에서 냉동창고 제작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감일지구에 편입되어 새로이 사업장을 확장하고자 하사창동 ○○○번지에 인허가를 득하고 부지확장의 필요성이 있어 ○○○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 ○○○번지도 발굴조사를 실시(2013. 8. / 한양대박물관)하여 향후 사업시행과정에 유적의 손상이 없도록 보존대책을 강구(유구에서 1.5m 성토)하여 공사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이번 사업부지도 1.5m 성토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다각도로 판단하시어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자체 의견(하남시)

- 최근 천왕사지 문화재 발굴 결과 하사창동 ○○○번지(동식물보관창고/한국문화재재단), 하사창동 ○○○번지(근린생활시설/(재)화랑문화재연구원), 하사창동 ○○○번지(근린생활시설/(재)화랑문화재연구원), 하사창동 ○○○번지(근린생활시설/하남역사박물관)에서 천왕사지의 목탑지-석등지-답도-강당지-금당지-회랑지-배수로를 일렬로 연결하는 축이 확인 됨
- 천왕사지 주변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지역으로 일부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건축물과 창고(동식물관련시설) 등 건축행위를 허가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환경이 훼손되었음
- 또한,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온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 단기적으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보존토록 조치한 후 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아. 의결사항

- 보류
 - 하남시의 유적 보존 방안 제출
- 보류 7명 / 출석 7명

21.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4. 7.)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 하남시 하사창동 ○○○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발굴 575㎡
- (4) 발굴기관 : 하남역사박물관
 - 조사단장 : ○○○(동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동 박물관 책임연구원)
- (5) 발굴기간 : 2014. 11. 9.~2015. 4. 17.
- (6) 조사결과
 - 조사결과 건물지 1동과 배수로 1기, 적석유구 2기, 담장 1기, 기단 석렬 4기, 소성유구 2기, 수혈 4기 등 총 15기가 노출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황갈색사질점토층을 기반으로 유구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유물은 대부분 평기와가 출토되었으며, 적심 주변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기와편이 확인됨
 - 유물과 주변에서 조사된 사례를 통해 보았을때 건물의 축조시기는 남북국시대 말기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 ○○○, ○○○, ○○○)

- 천왕사지 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서편 일부와 회랑지가 확인되었으며, 회랑지에 연결된 북쪽에서 줄기초 건물지가 확인됨
- 출토유물은 귀면수막새, 연화문수막새, 금도금청동수각, 당초문암막새, 승석문암키와 등이 수습됨
- 하사창동 ○○○번지와 연결되는 천왕사지 강당지의 서편 일부와 회랑지가 확인된 중요한 유적으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임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4. 7. / ○○○, ○○○, ○○○)

- 평가 평점 : 84.81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천왕사지의 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서편 일부와 회랑지가 확인되었으며, 최랑지 북쪽에서 줄기초 건물지가 확인된 중요한 유적으로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측에 인접한 하사창동 ○○○번지와 연관된 유적으로 사찰의 강당지의 회랑으로 추정되며, 서측 끝에서는 영역의 경계인 담장지가 확인되어 서측 경계를 알 수 있음. 인접한 하사창동 ○○○번지와 함께 보존함이 타당함
- 본 사업지역은 천왕사지 안에 위치하며 하남지역의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특히 진단구로 이용된 도기와 관련 유물은 사찰 건축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많음. 건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유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사업시행자 의견(○○○)

- 신축건물은 1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신청대지의 기존 지반선에서 유구출토부분까지의 고저차가 60~120cm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성유구, 기단 석렬2,3 부분은 기존 지반에서 60cm 깊이, 이외의 부분은 120cm 깊이에 위치)
- 고저차가 60cm인 부분을 기준으로 유구출토 지반선으로부터 100cm 이격 되도록 하여 모래주머니 및 마사토로 발견된 유구의 훼손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며, 훼손방지반선 위로는 100cm 복토예정이므로 실제 기존 지반선에서 140cm 까지 훼손방지 및 복토부분으로 형성됩니다.
- 건물을 시공하기 전에 먼저 유구의 훼손과 기존지반의 손실이 없도록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시공·관리 감독 후 건물시공을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자체 의견(하남시)

- 최근 천왕사지 문화재 발굴 결과 하사창동 ○○○번지(동식물보관창고/한국문화재재단), 하사창동 ○○○번지(근린생활시설/(재)화랑문화재연구원), 하사창동 ○○○번지(근린생활시설/(재)화랑문화재연구원), 하사창동 ○○○번지(근린생활시설/하남역사박물관)에서 천왕사지의 목탑지-석등지-답도-강당지-금당지-회랑지-배수로를 일렬로 연결하는 축이 확인 됨
- 천왕사지 주변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지역으로 일부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건축물과 창고(동식물관련시설) 등 건축행위를 허가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환경이 훼손되었음
- 또한,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온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 단기적으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보존토록 조치한 후 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아. 의결사항

- 보류
 - 하남시의 유적 보존 방안 제출
- 보류 7명 / 출석 7명

22. 하남 향동 ○○○, ○○○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하남 향동 ○○○, ○○○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남 향동 ○○○, ○○○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4. 7.)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 하남시 향동 ○○○, ○○○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758㎡[발굴-758㎡]
- (4) 발굴기관 : (재)한국문화재재단
 - 조사단장 : ○○○(동 연구단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2팀 부팀장)
- (5) 발굴기간 : 2015. 1. 20.~2015. 4. 13.(73일)
- (6) 조사결과
 -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모두 17기로서 나말여초시기에 해당하는 건물지 8동, 석렬 3기, 배수로 2기, 적심 3기, 수혈 1기 등이 조사됨
 - 유물은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한 기와가 주종을 이루며 기와편과 토기편, 청자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에 해당함
 - 조사대상지는 ‘봉수사지’로 추정되었던 지역이나, ‘봉수사지’로 확정지을 만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 다만, 문헌기록에 ‘俱在漢山’이라 하여 ‘약정사’, ‘신복선사’와 함께 한산에 있었다고 하며, 1995년 지표조사 때 원형주좌가 확인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았을 때 사지 성격의 유적으로 추정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 ○○○, ○○○, ○○○)

- 건물지의 규모 및 대형 적십시설 등 사지건물 축조상태 및 출토 유물로 보아 사찰 유적으로 파악됨으로 보존대책을 강구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겠음
- 향동 400-8번지 건물지가 계속 이어져 형성된 동일 유적으로 건물지 조성방법 및 축조 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4. 7. / ○○○, ○○○, ○○○)

- 평가 평점 : 80.96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출토유물로 볼 때 고려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며, 기와들을 볼 때 사찰과도 관련된 건물지로 추정되며, 조사지역이 봉수사지로 이와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이 큼
 - 관련규정에 따라 유적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십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봉수사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8동과 석축시설, 배수로가 확인되었으며, 나말여초에 해당하는 사지유구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보호하는 것이 좋겠음

바. 사업시행자 의견(○○○)

- 유구출토 지반선으로부터 100cm 이격 되도록 하여 모래주머니 및 마사토로 발견된 유구의 훼손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며, 훼손방지 지반선 위로는 120cm이상 복토하여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유구의 훼손과 기존지반의 손실이 없도록 현장에 대해 철저한 시공, 관리 감독을 하겠음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후 조치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23. 파주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파주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4. 9. 23.)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4. 9. 23.)하고,
- 유적의 보존방안에 대하여 2015년 제2차 매장문화재분과 회의(2015. 2. 27.)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자 의견 3안으로 하되 설계계획 제출받아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으로 동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사업시행방안)을 재심의 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경기도건설본부장
- (2) 발굴장소 :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법원읍 대능리 일원
- (3) 발굴면적 : 시굴 5,934㎡ / 발굴 4,700㎡
- (4) 발굴기관 : 경기도자박물관
 - 조사단장 : ○○○(동 박물관장 직무대행)
 - 책임조사원 : ○○○(동 박물관 학예연구사)
- (5) 발굴기간 : 2014. 4. 10.~9. 25.
- (6) 조사결과
 - 신석기시대 주거지 39기 및 수혈 1기, 조선시대 토광묘 24기, 조선 후기~근대 건물지 1기, 미상수혈 4기와 (추정)숫가마 1기를 포함하여 모두 70기의 유구가 확인됨

라. 추진경과

(1) 전문가 검토회의

- 1차(2014. 9. 2. / ○○○, ○○○)
 - 구릉 정상부와 경계면에 신석기시대 주거지 39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 외 동서면에 주거지가 계속 분포하고 있어,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으로 최대로 판단됨
 - 조사 미완료 유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망됨
 - 역사성, 희귀성, 집단성, 접근성 등으로 미루어 중요 거점 마을로 추정되며 유적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2차(2014. 9. 23. / ○○○, ○○○, ○○○)

- 신석기시대 집터 39기를 비롯하여 조선시기 토광묘, 건물지 등이 확인됨
- 신석기 집터의 노지, 단, 유물 등을 중부내륙지역 기초사내용과 비교하면 특이함이 있음
- 중부내륙지역의 신석기 문화성격 파악에 도움이 되고 마을 형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내부시설(노지, 단시설, 출입부)이 특이함
- 유적에 대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있으므로 조사 후 복토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여 유적이 보존되도록 조치할 것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4. 9. 23. / ○○○, ○○○, ○○○)

○ 평가 평점 : 88.89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마을유적이 확인됨,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의 내부 구조 및 성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보존조치를 강구하여 현지 보존하는 것이 좋겠음
- 중서부지역 전기 신석기시대의 대형취락지로 역사문화교육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복토한 뒤 고가구간으로 유적지를 통과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3) 2014년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4. 11. 21.)

- 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됨

(4) 현지조사(2014. 12. 11. / ○○○, ○○○, ○○○)

- 중부 내륙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다수의 주거지와 유물이 확인되었음
- 이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복토보존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여 보존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더불어 주변지역도 함께 보존되어야 함

(5) 2014년 제13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4. 12. 19.)

- 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됨

(6) 현지조사(2015. 1. 21. / ○○○, ○○○)

- 신석기시대 중기에 속하는 발굴사례가 드문 구릉성 취락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그 학술적·문화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이러한 유적의 가치를 고려하여 유적이 입지하는 구릉 능선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유적이 보호되도록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모색 요망, 즉 현재 발굴되어 노출된 능선의 양단의 유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후 도로노선 수정안 검토 요망
- 현재의 발굴구역 밖 북쪽에 입지하는 완만한 능선의 사업부지에 대한 추가 표본조사 요망
- 현재 조사된 유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일단 주거지 내부에 모래를 채우고 강우 등에 의해 추가적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긴급히 취할 것

(7) 2015년 제2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5. 2. 27.)

- 심의결과 : “사업시행자 의견 3안으로 하되 설계계획 제출받아 재검토”로 보류됨

마. 사업시행자 의견(경기도건설본부)

- 경기도는 법원읍 대능리 구릉지에 신석기시대 전기의 대규모 마을 유적이 존재함이 학술적으로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인식
- 보존방안 중 도로 선형 변경 안을 검토한 결과 조리~법원 도로 현장은 경기 서북부 주요 간선도로로써 일 교통량 32,269(대/일)로 통과 교통량이 많아 도로 선형 변경시 [R=250일 경우] 정지 시거 부족으로 대형 차량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 R=500m이상인 당초 도로 선형을 유지하면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복토[H=2.0m] 방안으로 시공 하겠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새로운 유적 보존 방안을 제출 받아 검토
- 부결 7명 / 출석 7명

24.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조치 이행계획 심의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의 보존방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존조치 실행방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3차 및 4차(매장문화재분과 / 2015. 3. 20. 및 2015. 4. 17.)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존조치 유적 이전장소 및 전시관 건립 등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충주시장
- (2) 발굴장소 및 면적 : 충북 충주시 호암동 627-1번지 / 발굴 29,865㎡
- (3) 발굴기관 : (재)충원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4) 발굴기간 : 2014. 8. 27.~2015. 4. 24.(실조사일수 150일)
- (5) 조사결과
 - 구석기 고토양층, 토광묘, 원삼국~조선시대의 주거지, 석실분 등 164기가 확인됨
 - 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에서 세형동검 등 청동유물 19점이 일괄 출토되었음
 - 적석목관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은 초기철기시대 충주지역의 대외관계와 문화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자료임

라. 추진경과

- (1) 전문가 검토회의(2015. 1. 20. / ○○○, ○○○, ○○○, ○○○)
 - 타제석기 등 구석기 유물과 초기철기시대의 적석목관묘, 목관묘, 세형동검 등의 청동유물이 확인됨
 - 구석기 유물이 집중 출토된 II-1지점의 3곳을 확장하여 조사할 것
 - 적석목관묘는 주변 공원지역으로 이전하되, 매장상태를 볼 수 있는 단면 등을 재현(복원)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유지 관리를 위해 지붕설치 등을 고려할 것

- 구석기 유적의 퇴적단면을 전사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적석목관묘 발굴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지석 등을 설치하고, 발굴사진과 출토유물 (복제) 등을 체육시설 내에 전시 할 수 있도록 할 것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1. 20. / ○○○, ○○○, ○○○)

- 평가 평점 : 76.01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구석기 퇴적층과 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의 학술적 중요성이 제기되므로, 이전복원·재현·전시 등을 고려한 보존방안을 강구할 것

(3) 현지조사(2015. 2. 24. / ○○○, ○○○, ○○○, ○○○)

-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는 그 구조와 출토유물 등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임
- 유적의 보존방향은 관련 유적의 가치뿐만 아니라 관련 공·사익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문화재위원회(매장문화재분과) 심의(2015. 2. 27.)

- 심의결과 : ‘보류’(유적 보존조치 방안 보완 후 재검토)

(5)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2015. 3. 20.)

- 발굴결과, 확인된 중요유구(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1기 등)는 이전복원하되,
- 이전장소·전시관 건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6)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2015. 4. 17.)

- 사업시행자(충주시)가 제출한 보존방안(2안, 3안) 이행계획 보완 후 재검토

마. 사업시행자 보존조치 이행계획(안)

- 1안(남측 전면광장+주경기장 1층 남측 주출입구)
 - 진입광장 공원부지에 적석목관묘 등 중요유구를 이전복원하고, 주경기장 1층에 전시관 설치
- 2안(인접부지+전시관 신축)
 - 중요 유구 발굴지점과 유사한 입지와 조망권을 가진 인접부지에 이전복원하고, 이전 장소 인근에 전시관 신축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 보존조치 1안으로 시행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Ⅲ. 보고사항

1.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발굴조사허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에서 발굴조사 허가를 신청한 사항 중 조사기관 변경이 없는 연차발굴조사와 7일 이내의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 2014년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요청사항

다. 유적목록

문화재명 (유적명)	지정현황	신청사유	조사기관	면적 (㎡)	조사 유형	조사 기간	허가 일
풍납동토성 동성벽 추정 해자터	사적 제11호	동성벽 외곽 해자터 유존여부 확인	국립문화재연구 소	4,627	발굴	30	5. 13
서울 강서구 양천고성지 (4차)	사적 제372호	연차발굴을 통해 향후 정비 기초자료 확보	(재)한얼문화유 산연구원	190 2,600	발굴 시굴	25	5. 19.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제8차	사적 제12호	연차발굴을 통해 향후 정비기초자료 확보	공주대학교 박물관	12,000	발굴	150	4. 16.
예산 가야사지	충남도 기념물 제150호	연차발굴을 통해 향후 정비기초자료 확보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650	발굴	15	5. 13.
경주 천룡사지	사적 제311호	주변정비 기초자료 확보	(재)화랑문화재 연구원	2,530	시굴	5	4. 20.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7명 / 출석 7명